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08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신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등	3
2. 부칙	13

I. 제안경위

2024년 8월 1일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energi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

고, 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함(안 제2조).

Ⅲ. 검토의견

1. 신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정안은 수소에너지·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며, 그 밖에 신에너지 삭제에 따라 제명을 비롯한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u>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u>재생에너지의</u>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u> 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u>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재생에너지</u> ----- ----- --- <u>재생에너지</u>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

현행	개정안
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 기 위한 설비로서 <u>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u> 말한 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u>신·재생에너지</u> 발전”이란 <u>신·재생에너지</u>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 다. 5. “<u>신·재생에너지</u> 발전사업 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	-----<u>다음 각 목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u>-----. 가. <u>수소에너지 설비</u> 나. <u>연료전지 설비</u> 다. <u>태양에너지 설비</u> 라. <u>풍력 설비</u> 마. <u>수력 설비</u> 바. <u>해양에너지 설비</u> 사. <u>지열에너지 설비</u> 아. <u>바이오에너지 설비</u> 자. <u>폐기물에너지 설비</u> 차. <u>수열에너지 설비</u> 카. <u>전력저장 설비</u> 타. 그 밖에 <u>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설비</u> 4. --<u>재생에너지</u>-----<u>재 생에너지</u>----- -----. 5. --<u>재생에너지</u>----- ----- -----

현행	개정안
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u>신·재생에너지</u>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 -----<u>재생</u> <u>에너지</u>----- -----. (제4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 안 제4조부터 제33조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임(전체 조문대비표는 의안원문 참조).

세계 주요국들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각종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보급사업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법」은 1987년 12월에 제정된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의 제명이 변경된 것인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은 에너지원 다양화를 목적으로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로 정의하며 이에 관한 기술개발 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고,

2004년 12월 법률의 적용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제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였으나, ‘신에너지(new energy)’¹⁾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구

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신재생에너지법」 적용대상(법 제2조)]

구 분	개 념	종 류
신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²⁾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1)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체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차이가 있음.

2)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을 뜻함. 기존 석탄화력 발전보다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가 우리 법체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³⁾ 형태로 발급되고 있는바,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여 탄소중립과는 무관한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발급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음⁴⁾.

참고로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에너지와 개념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IEA의 재생가능에너지 분류]

에너지원분류	범위
태양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전기에너지
수력	전기에너지
해양에너지	전기에너지
지열	발전, 직접 열 이용
고체 바이오에너지	목재연료, 흑액, 동물폐기물 등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하수가스, 기타 혐기성 소화

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것으로 평가됨.

3)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4) 이투뉴스,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및 태양광 이격거리 법제화”, 2025.11.5

	바이오가스 등
액체 바이오연료	바이오 가솔린, 바이오 디젤 등
재생 도시폐기물	생분해성을 가진 도시폐기물

자료: IEA의 Renewables information Database documentation(2025)

이에 개정안은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동 법률을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이용·보급을 촉진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안과 함께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관한 지원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로 이관하는 내용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07호)(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개정안은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에너지 중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관한 사항은 「수소법」으로 이관⁵⁾하여 「수소법」에 따른 각종 지원제도 등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법」은 「재생에너지법」으로 변경하여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률 체계로 변경하려는 취지임.

5)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에너지 중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 법률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효과임.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

	현행	개정안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정의	(신e)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 (재생e)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 제외), 수열에너지(대통령령) (설비) 미규정(시행규칙 규정)	(신e) <삭제> (재생e) <좌동> (설비) 법률에 규정
주요 대상 변경	(기본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신·재생에너지 (사업비조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통계,국유지 등) 신·재생에너지 (센터) 신·재생에너지 센터	(기본계획 등) 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재생에너지 (사업비조성)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재생에너지 (통계,국유지 등) 재생에너지 (센터) 재생에너지 센터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하여 연구·보급지원, 이용의무화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동 법률의 구조로 인하여 탄소중립과는 무관한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성격이 다른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분리함으로써 국가의 주요 정책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구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제2조제3호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변경하면서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에너지 종류별 설비를 각 목에 직접 규정(‘수소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설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법률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분	내용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2조제3호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수소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설비를 이 법의 규정대상으로 하는 실익이 적고, 「수소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소법 개정안」 중 수소에너지 등 규정 내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연료전지”란 「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u> 」 제2조제1호에 따른 <u>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u>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수소</u> ----- ----- ----- -----. 11. “수소에너지”란 <u>수소의 화학적 에너지를 원료로 이용하거나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u>

현행	개정안
<신설>	는 에너지를 말한다. 12. “수소에너지 설비”란 물 또는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연료전지, 수소가스 터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둘째, 개정안 제2조제3호에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와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등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에너지 종류별 설비를 각 목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기술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하위법령(시행규칙)에 설비에 대한 상세 정의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이 법률 조항의 간소화 및 신속한 하위법령 개정의 용이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 제2조제3호타목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정부조직 개편(2025.10.1.)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부칙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부칙 제1조),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및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및 재생에너지센터로 각각 변경되는 상황을 고려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부칙 제2조 및 제3조).

또한 신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또는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부칙 제4조), 다른 법률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인용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부칙 제5조).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생에너지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생에너지센터는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부 칙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업무 중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소관 업무를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신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공급자로서 종전의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심의회 구성, 센터 설립, 공인인증서 발급 및 발전차액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입법공백을 방지하고 사업 관리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과 타법(49개)⁶⁾의 하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소요기간, 신에너지 제외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및 공급량 재산정 검토, REC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법」의 적용이 배제되면서 「수소법 개정안」의 적용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⁷⁾⁸⁾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보호 조치⁹⁾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공급인증서 발급 등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부칙 제4조와 관련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및 발전차액 지원 등은 기존 사업자의 신뢰 보호, 법률유보 원칙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²⁾¹⁰⁾에 따라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9개 법률이 「신재생에너지법」을 인용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신에너지 제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7) 현재 한국서부발전의 태안 석탄가스화복합발전 1개소만이 가동 중인 상황임.

8)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사업자의 경우 현재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REC 실적을 인정(RPS 의무량에서 차감)받고 있고, 「개별소비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있음.

9) 개정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발전차액을 지원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발전차액을 지원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음.

10)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개별소비세 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은 단순히 사업자의 반사적 기대이익이라기보다 실체적 권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면세혜택 유지 등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¹¹⁾,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 기존 행정계획 및 정책심의기구, 전문기관의 효력 유지를 위한 경과규정, 기존 R&D 및 보급사업 등 예산사업 근거조항, 국공유지 임차인 등에 대한 효력 유지 등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9개 법률은 「신재생에너지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제명 변경으로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법」에 따른 수소에너지 등을 이원화하여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법 제10조¹²⁾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비의 사용은 「수소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 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1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대규모 전력생산자(발전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12) 「신재생에너지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신·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 1. 28.>
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인증 및 사후관리
6. 신·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8.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수소법」 개정 여부에 맞춰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

-
9.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